DEDICA
—DEDICATED LAWYERS—

296/2026/NĐ-CP 시행령 주목할 만한 22가지 변경사항 기업 등록에 관하여

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

168/2025/NĐ-CP 시행령 개정·보충

www.dedica-law.com · david@dedica-law.com · 039 969 0012

본 자료의 22가지 변경사항

01	타인을 위한 차명 출자 금지
02	실소유자에 대한 새 정의
03	실소유자 판정 1단계: 25% 기준 확대
04	실소유자 판정 2단계: 실질 지배
05	실소유자 판정 3단계: 권한에 따른 판정
06	소유구조를 단계별로 검토할 의무
07	기관 주주에 대한 통지의무 폐지
08	서류상 증빙 사본 대폭 감축
09	번역본: 공증을 서명 인증으로 대체
10	투자등록증 취득 전 기업 설립
11	외국인 주주 변경 서류의 주식 증여
12	위임 시 전자 인증 범위 축소
13	온라인 등록 절차의 입구 변경
14	서명권자 직접 제출: 전자서명 불요
15	수임인 제출: 서명 전부 필요
16	전자문서 외에 전자데이터도 인정
17	다수의 03영업일 기한을 02일로 단축
18	연속 일시중지 총기간에 24개월 상한
19	05영업일 내 영업 재개 확인
20	일시중지가 등록의무를 정지시키지 않음
21	비상장회사: 해산 서류에 주주명부 첨부
22	비상장회사 주주정보 06년 보관

실소유자 3단계 판정 흐름도, 경과규정 및 빠른 조회표 포함.

출자와 신고 책임

변경 01 — 타인을 위한 차명 출자 금지

종전

- 기업 설립자 또는 기업이 등록서류를 직접 신고하며, 신고한 정보의 적법성·진실성·정확성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진다.

2026년 7월 23일부터 (시행령 296/2026)

기업 설립자 또는 기업이 기업등록서류를 직접 신고하며, 등록서류 및 보고서에 신고한 정보의 적법성·진실성·정확성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진다. 회사의 소유자, 주주, 사원은 《기업법》 제34조 제2항의 출자재산에 관한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며, **타인을 위해 차명으로 기업에 출자하지 아니한다.**

DEDICA 참고: 인용된 《기업법》 제34조 제2항은, 재산에 대해 적법한 소유권을 가지거나 적법한 사용권을 가진 개인·조직만이 해당 재산으로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. "차명 금지" 의무가 기업등록법에서 독립된 원칙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 친족·직원·파트너의 명의로 출자지분을 대신 보유하게 하는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.

법적 근거: 시행령 168/2025/NĐ-CP 제4조 제1항 — 시행령 296/2026/NĐ-CP 제1조 제1항에 의해 개정

실소유자

변경 02 — 실소유자에 대한 새 정의

종전

- 실소유자란 **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** 개인이다:

(a) 정관자본금의 25% 또는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25%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;
(b) 열거된 지배구조 사항 중 최소 하나의 통과를 좌우할 권한 보유.

2026년 7월 23일부터

본 조는 전문 교체됨

- **한 명 또는 여러 명의 개인**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**기업을 최종적으로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**하는 것을 말한다.
- **기업 내에서 국유자본을 대표하는 개인은 제외**된다.
- 판정은 제17조의 **3단계 순서**에 따라 이루어지며, 더 이상 병렬 기준이 아니다:

① 정관자본금 또는 의결권 있는 주식 25% 이상을 소유한 개인 → ②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 → ③ 최대 권한을 가진 관리자.

법적 근거: 시행령 168/2025/NĐ-CP 제17조 — 시행령 296/2026/NĐ-CP 제3조에 의해 개정

실소유자

실소유자 판정 3단계 절차

시행령 296은 “기준 중 하나 충족” 방식을 강제 순서의 3단계 절차로 대체한다. 다음 세 장의 슬라이드에서 각 단계를 분석한다.

1단계

정관자본금 또는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≥25%를 소유한 개인이 있는가?

직접＋간접＋합산 · 친족 그룹 또는 계약에 의한 그룹 · 합명회사: 전체 합명사원

예 → 해당 개인을 신고

▼ **아니오, 또는 1단계의 사람이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있는 경우**

2단계

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이 있는가?

임원 임면/해임 · 정관 개정 · 조직구조 변경 · 재무·투자·경영 정책 결정 · 구조조정, 해산

예 → 해당 개인을 신고

▼ **아니오**

3단계

기업을 대표하여 행위할 최대 권한을 가진 기업 관리자를 신고

국유자본을 대표하는 개인 제외 · 이 단계는 공란으로 둘 수 없음

예 → 완료

법적 근거: 시행령 168/2025/NĐ-CP 제17조 및 제18조 — 시행령 296/2026/NĐ-CP 제3조 및 제4조에 의해 개정

실소유자

변경 03 — 실소유자 판정, 1단계: 25% 기준 확대

항목	종전 (시행령 168/2025)	2026년 7월 23일부터 (시행령 296/2026)
비율 산정 방식	25%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. 간접 소유란 다른 조직을 통한 소유를 말한다.	직접, 간접, 또는 **직접과 간접을 모두** 합쳐 25% 이상 (**합산**). 간접 소유는 **다른 조직 또는 다른 법적 약정**을 통한다.
개인 그룹	규정 없음.	《기업법》 제4조 제22항에 따른 **친족관계**(부부, 친부모 및 양부모, 배우자의 부모, 친자녀 및 양자녀, 며느리·사위, 친형제자매, 형제자매의 배우자)가 있거나 **계약에 의해** 공동으로 ≥25%를 소유하는 개인 그룹 → **그룹 내 전체 개인**이 실소유자가 된다.
합명회사	별도 규정 없음.	**전체 합명사원**이 출자비율이나 의결권과 무관하게 실소유자가 된다.

법적 근거: 시행령 168/2025/NĐ-CP 제17조 제1항 — 시행령 296/2026/NĐ-CP 제3조에 의해 개정

참고: 제17조 제1항이 전문 교체되었다. 다수 기업이 신고해야 할 실소유자 수가 증가한다. 예: 어떤 개인이 직접 15%, 모회사를 통해 12%를 보유. 종전에는 각 경로에서 기준 미달이었으나 이제 합산하여 27%가 된다.

실소유자

변경 04 — 실소유자 판정, 2단계: 실질 지배

종전

- 25% 기준과 **병렬하는 하나의 기준**이다.
- 다음 사항 중 최소 하나의 통과를 좌우할 권한을 가진 개인: 이사회 과반수 또는 전체 구성원, 이사회 의장, 사원총회 의장의 임면·해임; 법정대표자, 이사 또는 대표이사; 정관 개정·보충; 회사 관리조직구조 변경; 회사 구조조정·해산.

2026년 7월 23일부터

- **두 번째 판정 단계**로, 1단계에 부합하는 자가 없거나, **1단계로 판정된 개인이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있는 경우**에만 사용한다.
- 다른 방식으로 **법에 따라 또는 실제로** 판정하며,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권한을 통한다: 이사회·사원총회의 과반수 또는 전체 구성원 또는 의장, 이사, 대표이사의 임면·해임; 정관 개정·보충; 조직구조 변경; **재무·투자·경영 정책 결정**; 기업 구조조정·해산.

법적 근거: 시행령 168/2025/NĐ-CP 제17조 제2항 — 시행령 296/2026/NĐ-CP 제3조에 의해 개정

변경 05 — 실소유자 판정, 3단계: 권한에 따른 판정, 공란 불가

종전

- 규정 없음.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이 없으면 실제로 기업은 실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다.

2026년 7월 23일부터 (시행령 296/2026)

- **1단계와 2단계에 부합하는 개인이 없는 경우**, 기업은 한 명의 개인을 **기업을 대표하여 행위할 최대 권한을 가진 기업 관리자**로 정한다. 단, 국유자본을 대표하는 개인은 제외한다.

=> 실소유자 신고는 필수이며, **공란으로 둘 수 없음**

DEDICA 참고: 이는 영향을 받는 기업 수가 가장 넓은 변경이다. 2026년 7월 23일부터 법인격을 가진 모든 기업은 최소 한 명의 실소유자를 신고해야 한다. 투자펀드, 비상장 공개회사, 다층 외국인 소유 구조 기업 등 소유가 분산된 회사는 종전에는 공란으로 둘 수 있었으나, 이제 최고위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.

법적 근거: 시행령 168/2025/NĐ-CP 제17조 제3항 — 시행령 296/2026/NĐ-CP 제3조에 의해 보충

실소유자

변경 06 — 소유구조를 단계별로 검토할 의무

종전

- 기존 목록에 따라 신고.
- 기업이 지배권을 가진 개인을 스스로 확인하여, 있으면 신고.

2026년 7월 23일부터

- 기업은 **소유구조를 단계별로 검토**하여, 실제로 최종 소유권 또는 지배권을 가진 개인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.
- 제17조의 **3단계 순서**대로 신고:

① 정관자본금 또는 의결권 있는 주식 25% 이상을 소유한 개인;
②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;
③ 최대 권한을 가진 기업 관리자.

DEDICA 참고: 이 의무는 실소유자 신고를 "기존 목록에 기입하는 것"에서 실질적인 실사 작업으로 전환한다. 다층 외국인 소유 구조 기업은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완전한 소유구조도를 작성하기 시작해야 한다.

법적 근거: 시행령 168/2025/NĐ-CP 제18조 — 시행령 296/2026/NĐ-CP 제4조에 의해 개정

실소유자

변경 07 — 기관 주주에 대한 통지의무 폐지

종전

- 주식회사(상장회사 및 증권거래 등록회사 제외)는, 주주 또는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25% 이상을 소유한 기관 주주에 관한 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**10일 이내**에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통지해야 했다.
- 서류는 기업등록내용 변경 통지 및 실소유자 판정용 명단으로 구성된다.

2026년 7월 23일부터 (시행령 296/2026)

~~본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주주 또는 주주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, 주식회사는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통지한다. 단, 상장회사 및 증권거래 등록회사는 제외한다. 서류는 기업등록내용 변경 통지 및 기업 실소유자 판정용 명단으로 구성된다.~~

제52조 제2항 전체가 폐지되었다. 위에서 인용된 제18조 제3항은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25% 이상을 소유한 기관 주주를 가리킨다.

DEDICA 참고: 완화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. 제52조 제1항의 실소유자 통지의무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로 그대로 유효하며, “실소유자”의 범위는 변경 02~06에 따라 훨씬 넓어졌다. 실질적으로 법인 추적에서 개인 추적으로 중심이 이동한 것이다.

법적 근거: 시행령 168/2025/NĐ-CP 제52조 제2항 — 시행령 296/2026/NĐ-CP 제19조 제9항에 의해 폐지

서류와 증빙

변경 08 — 서류상 증빙 사본 대폭 감축

종전 (시행령 168/2025)

- 기업등록서류에는 《기업법》 및 시행령 168에 따른 각종 증빙 사본을 첨부해야 했다.
- 국가기관이 직접 발급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중인 증빙까지 포함.

2026년 7월 23일부터 (시행령 296/2026)

-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은 국가 및 전문 데이터베이스에 **이미 있는 정보를 조회·이용**한다.
- **사본 제출 불요:** 기업등록증 · 협동조합등록증 · 개인사업자등록증 · 세무등록증 · 투자등록증 ·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·주식매수 승인문서 · 국가증권위원회의 설립·운영 허가 또는 승인문서 · 확정된 법원 판결 · 및 서류상 기타 증빙.
- **조회할 수 없거나 정보가 불완전·부정확한 경우** → 여전히 사본 보완을 요구.

법적 근거: 시행령 168/2025/NĐ-CP 제4조 제7항 — 시행령 296/2026/NĐ-CP 제1조 제2항에 의해 보충

참고: 즉시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. 데이터로 서류 구성요소를 대체하는 것은 국가 기업등록 정보포털의 공지에 따라 시행된다. 기업은 매 제출 전에 이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.

서류와 증빙

변경 09 — 베트남어 번역본: 공증을 서명 인증으로 대체

종전

- 기업등록서류에 외국어 문서가 있는 경우, **공증된 베트남어 번역본**을 외국어 문서와 함께 첨부해야 한다.

2026년 7월 23일부터 (시행령 296/2026)

기업등록서류에 외국어 문서가 있는 경우, 서류에는 베트남어 번역본 공증 **번역자 서명 인증**을 외국어 문서와 함께 첨부해야 한다.

법적 근거: 시행령 168/2025/NĐ-CP 제10조 제2항 — 시행령 296/2026/NĐ-CP 제19조 제1항에 의해 문구 교체

서류와 증빙

변경 10 — 투자등록증 취득 전 기업 설립

배경: 143/2025/QH15호 《투자법》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,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등록증의 발급·조정 절차 이전에 투자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경제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. 단, 시장접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(제19조 제2항).

종전

- **특별 투자절차**만이 투자등록 전에 경제조직을 설립할 수 있었으며, 그 경우 서류에는 투자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지 않았다.

2026년 7월 23일부터 (시행령 296/2026)

- 투자등록증의 발급·조정 전에 기업을 설립하는 **모든 경우**에 **투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**.
- 대신, 기업등록신청서에 **시장접근 조건 충족 확약**을 기재해야 한다.

법적 근거: 시행령 168/2025/NĐ-CP 제24조 제6항(시행령 296/2026/NĐ-CP 제7조에 의해 보충) — 143/2025/QH15호 《투자법》 제19조 제2항·제3항, 제8조, 제51조 제1항

참고: 시장접근 조건 충족 확약은 법적 확약이므로 리스크가 투자자 쪽으로 이동한다. 종전처럼 투자등록기관의 관문 심사에 의존하기보다, 서명 전에 등록하려는 업종을 시장접근 제한목록과 면밀히 대조해야 한다.

변경 11 — 외국인 주주 변경 서류의 주식 증여

종전

- 외국인 투자자 주주 변경 통지 서류는 주식양도계약 또는 양도 완료 증빙문서; 사모발행 주식매수의 경우 출자 증빙문서로 구성되었다.
- **주식 증여**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.

2026년 7월 23일부터 (시행령 296/2026)

사본 또는 원본: 주식양도의 경우 주식양도계약 또는 양도 완료 증빙문서; 주주가 외국인 투자자로서 사모발행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출자 증빙문서; **주식 증여의 경우 주식 증여계약.**

법적 근거: 시행령 168/2025/NĐ-CP 제51조 제1항 c목 — 시행령 296/2026/NĐ-CP 제10조에 의해 개정

전자 인증

변경 12 — 위임 시 전자 인증의 강제 범위 축소

종전

- 위임인과 수임인은 기업등록을 받기 위해 전자 인증을 완료해야 했으며, 이는 위임이 있는 **모든** 기업등록 절차에 적용되었다.

2026년 7월 23일부터 (시행령 296/2026)

기업등록 절차를 수행하는 위임인과 수임인은 위임의 적법성·진실성·정확성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진다. 위임인과 수임인은 기업등록을 받기 위해 전자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**— 기업설립 등록, 법정대표자·유한책임회사 소유자 또는 사원 변경, 비상장 및 비증권거래 등록 주식회사의 창립주주 또는 외국인 투자자 주주 정보, 개인기업주, 합명사원 변경 등록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**.

즉 7가지 절차: ① 기업설립 · ② 법정대표자 변경 · ③ 소유자 변경 · ④ 유한책임회사 사원 변경 · ⑤ 비상장 주식회사 창립주주·외국인 주주 변경 · ⑥ 개인기업주 변경 · ⑦ 합명사원 변경.

법적 근거: 시행령 168/2025/NĐ-CP 제12조 제5항 — 시행령 296/2026/NĐ-CP 제2조에 의해 개정

변경 13 — 온라인 등록 절차의 입구 변경

종전

- 전자 신원확인 계정으로 **국가 기업등록 정보포털**에 로그인.
- 포털의 절차에 따라 신고, 전자문서 업로드,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명 및 수수료 납부.

2026년 7월 23일부터

- 전자 신원확인 계정으로 **국가 공공서비스 포털 또는 국가 신원확인 앱**에 로그인.
- **국가 기업등록 정보시스템에 접속**한 뒤, 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수속을 진행.

법적 근거: 시행령 168/2025/NĐ-CP 제39조 — 시행령 296/2026/NĐ-CP 제9조에 의해 개정

온라인 기업등록

변경 14와 15 — 언제 전자서명·업로드가 필요하고 언제 불필요한가

경우	서류 종류	전자서명/직접 서명 후 시스템 업로드 필요?
서명권자가 직접 서류 제출	내용이 시스템에 신고되고 한 명만 서명하면 되는 신청서 또는 통지	**불요**, 시스템에 직접 신고로 충분
	여러 명의 서명이 필요한 신청서 또는 통지	**필요**, 서명 후 업로드
	서류 구성상 기타 증빙	**필요**, 서명 후 업로드
수임인이 서류 제출	등록서류 구성상 전체 증빙	**필요**, 전자서명 또는 직접 서명한 전체 증빙을 신고·업로드

법적 근거: 시행령 168 제39조 제1항 a목·b목 — 시행령 296 제9조에 의해 개정; 제38조 제2항 d목 — 시행령 296 제8조 제3항에 의해 개정

변경 16 — 전자문서 외에 전자데이터도 인정

종전

- 온라인 기업등록서류는 규정된 각 증빙으로 구성되며, **전자문서 형식**으로 제출된다.

2026년 7월 23일부터 (시행령 296/2026)

온라인 기업등록서류는 규정된 각 증빙으로 구성되며, ~~《기업법》~~ **즉 2020년 《기업법》(2025년 개정·보충)** 및 본 시행령에 따라 전자문서 **또는 법령에 따른 전자데이터** 형식으로 제출된다. 온라인 기업등록서류는 종이 기업등록서류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.

서류의 유효요건(제38조 제2항 a목)과 위임 시 증빙(제38조 제2항 d목)도 같은 방향으로 개정되었다.

법적 근거: 시행령 168/2025/NĐ-CP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— 시행령 296/2026/NĐ-CP 제8조에 의해 개정

기한 단축

변경 17 — 다수의 03영업일 기한을 02일로 단축

수속	조항	종전	2026년 7월 23일부터
기업등록 수속 중단 통지 발부	제31조 제6항	~~03영업일~~	**02영업일**
지점·대표사무소·영업장소 운영등록 내용 변경 시 증서·확인서 발급	제56조 제5항	~~03영업일~~	**02영업일**
영업장소 법적 상태를 영업 종료로 전환	제66조 제4항	~~03영업일~~	**02영업일**
기업등록 정보 정정(4가지 경우)	제77조 제1·2·3·4항	~~03영업일~~	**02영업일**

법적 근거: 시행령 296/2026/NĐ-CP 제19조 제3항

변경 18 — 연속 일시중지 총기간에 24개월 상한

종전

- 각 통지의 일시중지 기간은 **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**.
- 연속 일시중지 총기간에는 **제한이 없어** 기업은 여러 번 연장할 수 있었다.

2026년 7월 23일부터 (시행령 296/2026)

[...] 각 통지의 일시중지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 **연속 영업 일시중지 총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**
제60조 제1항 후단 발췌. 통지 서류 제출 기한(일시중지일 최소 03영업일 전)에 관한 제1항 전단은 변경되지 않았다.

법적 근거: 시행령 168/2025/NĐ-CP 제60조 제1항 — 시행령 296/2026/NĐ-CP 제11조 제1항에 의해 개정

영업 일시중지

변경 19 — 05영업일 내 영업 재개 확인

종전

- 통지한 일시중지 기간이 만료되면 기업은 자동으로 영업을 재개하며 별도 수속이 필요 없었다.

2026년 7월 23일부터 (시행령 296/2026)

- 통지한 일시중지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**05영업일** 이내에, **법정대표자**는 **영업 재개를 확인하고,** 기업등록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확약해야 하며, 국가 기업등록 정보시스템의 절차에 따른다.

법적 근거: 시행령 168/2025/NĐ-CP 제60조 제8항 — 시행령 296/2026/NĐ-CP 제11조 제3항에 의해 보충

변경 20 — 일시중지가 등록의무를 정지시키지 않음

종전

- 영업 일시중지 기간 중 기업등록내용 변경을 등록할 의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.

2026년 7월 23일부터 (시행령 296/2026)

전체가 신규 보충 내용

- 영업 일시중지 기간 중 《기업법》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기업등록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(기업등록증 내용 변경 등록 및 기업등록내용 변경 통지), 기업은 **여전히 변경 등록 및 변경 통지를 이행**해야 한다.
- 주무 국가기관의 요구에 따른 영업 일시중지, 영업 정지, 영업 종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.

법적 근거: 시행령 296/2026/NĐ-CP 제60조 제7항(제11조 제3항에 의해 보충) — 제61조 제3항(제12조에 의해 보충)

해산

변경 21 — 비상장 주식회사: 해산 서류에 주주명부 첨부

종전

- 모든 채무를 변제한 날부터 05영업일 이내에, 기업은 《기업법》 제210조 제1항에 규정된 각 증빙을 포함한 해산등록서류를 제출한다.

2026년 7월 23일부터 (시행령 296/2026)

기업의 모든 채무를 변제한 날부터 05영업일 이내에, 기업은 본사 소재지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기업 해산등록서류를 제출한다; 기업 해산등록서류는 《기업법》 제210조 제1항에 규정된 각 증빙을 포함한다. **상장회사 및 증권거래 등록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, 등록서류상 기업 해산 통지에는 주주명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.**

법적 근거: 시행령 168/2025/NĐ-CP 제64조 제3항 — 시행령 296/2026/NĐ-CP 제13조에 의해 개정

해산

변경 22 — 비상장회사 주주정보 06년 보관

종전

- 회사 해산 후 국가 기업등록 데이터베이스상 주주정보의 보관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.

2026년 7월 23일부터 (시행령 296/2026)

전체가 신규 보충 내용

-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은 **상장회사 및 증권거래 등록회사가 아닌 주식회사**의 주주정보를 국가 기업등록 데이터베이스에 **회사 해산일부터 06년간 보관**한다.

법적 근거: 시행령 168/2025/NĐ-CP 제21조 제8a항 — 시행령 296/2026/NĐ-CP 제6조에 의해 보충

경과규정

진행 중인 서류와 일시중지 중인 기업은 어떻게 처리되는가?

① 2026년 7월 23일 전에 접수되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서류

서류 종류	적용 규정
해산등록서류, 영업 일시중지 통지	**시행령 296/2026/NĐ-CP** (신규정)
그 밖의 기업등록서류	시행령 168/2025/NĐ-CP (구규정)

② 2026년 7월 23일 전에 일시중지를 통지한 기업

상황	결과
가장 최근 통지 기간 종료 시점까지 연속 일시중지 총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	**가능** — 일시중지 등록을 계속할 수 있으나, 연속 총기간은 **2026년 7월 23일 전에 등록한 기간을 포함하여**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
연속 일시중지 총기간이 이미 24개월을 초과한 경우	**불가** — 가장 최근 통지한 일시중지 기간이 종료된 후 일시중지 등록을 계속할 수 없음

참고: 영업 재개 확인 의무(변경 19)는 2026년 7월 23일부터 일시중지를 통지하는 기업에만 적용된다. **근거: 시행령 296/2026/NĐ-CP 제20조 및 제21조.**

빠른 조회표 — 영향받는 시행령 168/2025 조항 (1/2)

시행령 168/2025 조항	내용	형식	시행령 296/2026 조항
제4조 제1항	신고 원칙; 차명 출자 금지	개정	**제1.1조**
제4조 제7·8항	증빙 대신 데이터 활용; 국유기업	보충	**제1.2조**
제10조 제2항	베트남어 번역본	문구 교체	**제19.1조**
제12조 제5항	위임 시 전자 인증	개정	**제2조**
제17조	실소유자	전문 개정	**제3조**
제18조	실소유자 신고	전문 개정	**제4조**
제21조 제8a·9항	주주정보 06년 보관	보충/문구 교체	**제6조; 제19.2조**
제24조 제6항	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등록증 취득 전 기업 설립	보충	**제7조**
제31조 제6항	기업등록 수속 중단	문구 교체(03→02일)	**제19.3조**
제37조	온라인 기업등록	폐지	**제19.9조**
제38조 제1·2항	온라인 등록서류	개정	**제8조**
제39조	온라인 등록 절차	전문 개정	**제9조**

빠른 조회표 — 영향받는 시행령 168/2025 조항 (2/2)

시행령 168/2025 조항	내용	형식	시행령 296/2026 조항
제51조 제1항 c목	외국인 투자자 주주 변경 서류	개정	**제10조**
제52조 제2항	기관 주주 지분 ≥25% 통지	폐지	**제19.9조**
제53조 제2항	세무등록 응용시스템	문구 교체	**제19.4조**
제56조 제5항	지점·대표사무소·영업장소 운영등록 변경	문구 교체(03→02일)	**제19.3조**
제60조 제1·2·7·8항	영업 일시중지	개정/보충	**제11조**
제61조 제3항	일시중지·정지 요구 시 변경	보충	**제12조**
제64조 제3항	해산 서류, 주주명부	개정	**제13조**
제66조 제4항	영업장소 영업 종료	문구 교체(03→02일)	**제19.3조**
제72조	파산 시 법적 상태 전환	전문 개정	**제14조**
제77조 제1–4항	기업등록 정보 정정	문구 교체(03→02일)	**제19.3조**
제124조 제3항	출자등록 문서에 관한 시행령 31/2021 개정	폐지	**제19.9조**

문의하기

DEDICA의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 팀이 언제든 도와드립니다. 심도 있는 법률 자문과 서비스를 위해 지금 문의하세요.

기업 및 투자	상시 법률 자문	분쟁 해결
형사	인수·합병(M&A)	상표 및 저작권

주소

호치민시 쑤언호아동 하이바쯩 171번지 A&T 빌딩 11층

전화

+84 39 969 0012

이메일

david@dedica-law.com

웹사이트

www.dedica-law.com

지금 전화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 상담을 받으세요.